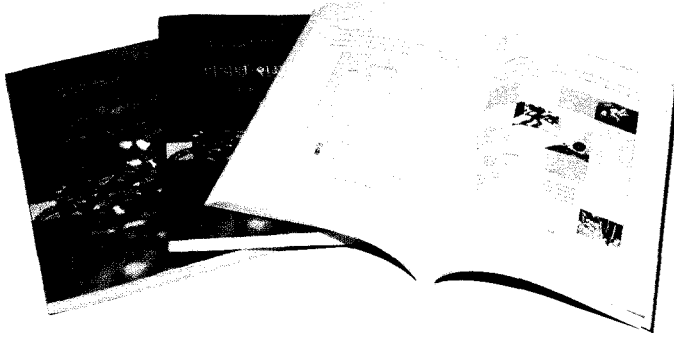


인쇄기준 요금제도
시장논리 내세워 폐지키로 결정
“과당경쟁 심화” 업계 우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 5월 31일 인쇄기준요금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을 통해 폐지된 '인쇄기준요금'을 대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밝힌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은 <표1>과 같다.

<표1>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구 분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동일(유사)한 구매(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매(계약) 사례간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 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

시장 경제 논리 내세워 폐지

조달청이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내세운 논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인쇄기준요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70년대와 달리 정부가 특정물품의 기준요금을 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이 약화되었고 조달청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기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여전히 인쇄기준요금을 예산편성 및 인쇄물 구매가격 결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기준요금'을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조달청과 공정위는 16,000여개의 인쇄 업체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결정은 경쟁 제한적인 역기능만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른 품목에서도 정부주도요금이 폐지되는 추세여서 '인쇄기준요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조달청은 인쇄기준요금이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경우, 감사에 대한 부담과 예산절감 및 인쇄장비 발전을 이유로 그동안 '인쇄기준요금'의 하락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달청의 결정은 그동안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달청의 인쇄물 가격조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인쇄업계의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또한 정부노임단가 및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한 인쇄업계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아쉬움과 앞으로 범업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숙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2006년 이후 미발표된 기준요금

‘인쇄기준요금’은 지난 1976년 10월에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인쇄물가격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해마다 시중거래가격 조사 또는 원가계산에 따라 전년 대비 변동폭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 왔으며 조정된 인쇄요금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시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이후 인쇄기준요금은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상되더라도 2% 수준에 그친 바 있다.

〈표2〉 연도별 인쇄기준요금 책정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일반 인쇄	동 결	2% ↑	동 결	2% ↑	동 결	2% ↑
경인쇄	동 결	2% ↑	동 결	2% ↑	동 결	2% ↑

조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인쇄비 조정에 대하여 조달청과 인쇄업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이 발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쇄장비의 발달로 작업 효율이 향상되어 인쇄비 하락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고가 인쇄장비의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디자인(조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원부자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디자인이 인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획일적인 ‘인쇄기준요금’의 적용이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되어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조달청의 입장은 디자인작업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 저하, 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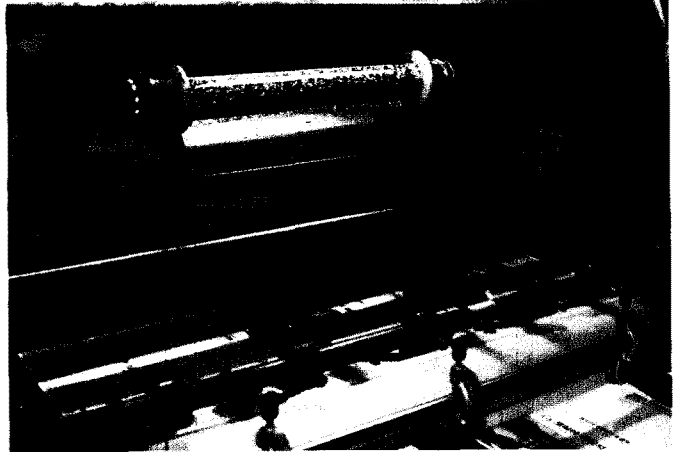
특히, 2006년 이후 ‘인쇄기준요금’이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부 수요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시에 후보자에 대한 벽보 발행 비용 산정시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인쇄기준요금을 원가계산자료로 활용토록 하는가 하면, 각 선관위의 투표용지, 선거용 책자 및 각종 홍보물 원가계산시에도 이를 이용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매년 인쇄비 예산 편성시에 세부지침으로 활용해 왔으며 매년 발간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책자) 후반부에 기준요금을 적용, 수록해 왔다.

시장 자율성 내세워 폐지, 인쇄업계 어려움 배려 부족

수년째 발표되지 않은 ‘인쇄기준요금’이 일부에서 사실상 그대로 사용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던 차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결정은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초과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업자의 개별적인 인쇄요금 결정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 결정에 관한 업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각 부처, 2012년도부터 폐지기로 합의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조달청 등은 인쇄기준요금의 활용과 작성을 전면적으로 폐지기로 합의하고 2012년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인쇄비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예산안 작성시 ‘인쇄요금기준’을 적용토록 하던 것을 금년(2012년도)부터 삭제(폐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기준요금’ 활용 중단에 동의하고 선거후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때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대신에 견적가(3개업체중 평균가격) 등을 참고하여 비용산출을 대신키로 했다.

조달청은 기초금액을 결정할 때,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의 절대적 활용보다는 다수의 견적가, 예산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설명

인쇄물 기초금액을 책정할 때, 거래실례가격, 세부견적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구매(계약)사례가 있는 경우, 최근 구매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키로 했다. 한편,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 판단 후 결정할 방침이다.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08호, 11.4.27) 제7조제4항 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매사업국) ④자재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인쇄 기준 요금 결정에 관한 업무	제7조(구매사업국) ④자재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삭제>

조달청 사무분장 규정(조달청 훈령 제1512호, 11.4.27) 제22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자재장비과) 자재장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인쇄 기준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자재장비과) 자재장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삭제>